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86-10



## 제 I 권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 I 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장애인등록 등)

제 II 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지역사회복지, 기타 복지 사업 등)

제 III 권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 IV 권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 V 권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 VI 권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 VII 권 |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제 VIII 권 |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 IX 권 |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제 X 권 |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 XI 권 |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 02

## 장애인등록제도





## 2-1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 1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 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 3 장애인등록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장애인의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u>척추장애</u> ,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주의**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 유형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
1. 지체 장애	상지절단		○	○	○	○	○	○
	하지절단		○	○	○	○	○	○
	상지관절		○	○	○	○	○	○
	하지관절		○	○	○	○	○	○
	상지기능		○	○	○	○	○	○
	하지기능		○	○	○	○	○	○
	척추장애			○	○	○	○	○
	변형장애						○	○
2. 뇌병변장애			○	○	○	○	○	○
3. 시각장애			○	○	○	○	○	○
4. 청각 장애	청력			○	○	○	○	○
	평형				○	○	○	
5. 언어장애					○	○		
6. 신장장애				○			○	
7. 심장장애			○	○	○		○	
8. 호흡기장애			○	○	○		○	
9. 간장애			○	○	○		○	
10. 안면장애				○	○	○	○	
11. 장루·요루장애				○	○	○	○	
12. 뇌전증장애				○	○	○	○	
13. 지적장애			○	○	○			
14. 자폐성장애			○	○	○			
15. 정신장애			○	○	○			

#### 4 장애인등록 절차





## 5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li> <li>○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li> <li>○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li> </ul>
시·군·구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li> <li>○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필요 시)</li> <li>○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정도심사 의뢰</li> <li>○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li> <li>○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정도조정</li> <li>○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li> <li>○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li> <li>○ 장애인등록제도 홍보</li> <li>○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li> <li>○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li> </ul>
장애진단 기 관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li> </ul>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 관련 사전상담</li> <li>○ 장애정도 인정 및 심사에 관한 업무 (장애정도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협조 등)</li> <li>○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이의신청 심층 상담 포함)</li> </ul>



## 참고 장애등록제도 연혁

1982. 5.22.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표)
1991. 6.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장애인의 장애등급표)
2000. 1.21. : 장애등급판정기준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 : 10개 장애유형 확대
2003. 6.28.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 : 15개 장애유형 확대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월 7만원 → 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 2007.10.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법률 용어 변경
2010. 1. 1. :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대상자
2010. 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법 제32조제6항)
2010. 7. 1. :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항)하도록 규정
2011. 3.30.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3호) : 총론 적용원칙 신설
2011. 4. 1. :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2011. 8.19.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1호) : 안면장애 기준 추가
2012. 6. 8.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3. 1.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2013. 4. 3.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 일부 기준 신설 등
- 2013.11.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2015. 5. 5.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5-188호) :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 용어 변경
- 2015.12.2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심사자료 발급대행 법률적 근거 마련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7.8.9.) :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조항 제정
- 2017.12.19.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일 2018.3.20.) :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2019. 7. 1.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2020. 3.12.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 : 기준 신설 등
2020. 7. 1. : 장애정도심사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 2020.10.30. :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1. 4.13.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 110호)
2022. 1.28.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17호)
2023. 3.21.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43호)



##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 1 장애인등록 상담

(1) 상담주체: 시·군·구, 읍·면·동

(2) 상담방법: 유선, 내방

(3) 상담내용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p.191참고)를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내방 민원의 경우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배부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
    -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기존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재판정을 받거나, 신장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등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인 경우(p.59) 서류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p.126)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함.
  - 장애인등록 신청과 비용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통장사본\*, 영수증)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함
    - \* 행복e음에서 계좌확인 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장애정도 심사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함.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지체 장애	상지 (절단, 관절, 기능)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 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기능)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cm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척추가 휨(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cm 이하, 여자 140cm 이하인 사람		
2. 뇌병변 장애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젤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시각 장애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야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검보임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검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4. 청각 장애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5. 언어 장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SSI: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6. 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7. 정신 장애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자폐성 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 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9. 신장 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10. 심장 장애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11. 호흡기 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늑막루가 있는 경우 폐를 이식받은 경우
12. 간장애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간을 이식받은 경우
13. 안면 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14. 장루·요루 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15. 뇌전증 장애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 장애유형별 주요 필수구비서류 】**

※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참조(p.191)

장애유형	필수구비서류	
지체	절단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관절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
	기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근전도검사결과지,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
	척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수술기록지
	변형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뇌병변	뇌졸중 등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뇌영상자료(CT, MRI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뇌성마비 등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파킨슨질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호엔야척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시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전안부 사진, 칼라 안저사진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청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순음청력검사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 평형기능장애의 경우 검사결과지(안진검사 등), 진료기록지(1년)	
언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6개월 이상) * 후두전적출술의 경우 진료기록지 중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	
지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적장애인 경우 뇌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6개월) 제출	
자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지수, 자폐척도),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정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질환에 따른 검사결과지,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신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투석기록지(최근 3개월 이상)	
심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판정기준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호흡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폐기능검사결과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1년)	
간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간기능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안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칼라사진(귀가 보이는 정면, 좌/우측), 진료기록지(6개월)	
장루·요루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요역동학검사 등(심한 배뇨장애의 경우)	
뇌전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2년, 소아의 경우 질환에 따라 1년)	

※ 신장, 심장, 호흡기(폐), 간이식의 경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및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



### 【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 】

#### 1.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5년 이내에 등록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장애정도심사기준 제6조제2항 및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

-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및 뇌전증(소아청소년) 장애: 1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및 뇌전증(성인) 장애: 2년
-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5년
- 절단장애 : 기존 장애진단서 제출 가능

#### 2. 등록된 신장장애인이 재판정 심사를 받는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기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제출가능

#### 3. (장애연금 자료 활용)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원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란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 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동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안내문」(서식17) 교부 필수

#### 4.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원칙)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완화내용) 재판정에 한하여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자료로 심사 가능함.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1) 발급주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판정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성실히 발급해야 함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 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상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 전문의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 (1)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 ①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 본인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또는 그 사본) 첨부 필요
- ②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 법정대리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또는 그 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결정문 등)

-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 사진 1장 제출(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 신청인의 문제상황 또는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신청서상 소득,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등 9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1가지 이상 체크하도록 함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 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 동시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장애인으로 등록 결정된 이후 장애인등록증 추가 신청없이 발급 가능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의 경우 서비스 신청내용도 함께 작성하고,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징구함.

\* 행복e음에서 계좌확인 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서상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신청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안내문」(서식17)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청서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란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심사사항 추가안내)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에 대한 통합 심사가 진행(서식8)됨을 장애인 등록 신청시 사전 안내함(등급제 폐지 이후)

### 【신청 유형 구분】

####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 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2. 의무 재판정

- 중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 받도록 함)

#### 3.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 4.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가**
  - ⇒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 ③ **시각장애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신규**

#### 5.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2)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우선 확인함
  - 필수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완 접수토록 함(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반려)
- (구비서류 하자)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동일한 장애유형으로 최초 1회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에 유의
- (공단의 추가 보완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4 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

### (1) 장애정도 심사 요청(시·군·구,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함
  - 장애심사 요청서(서식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심사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p.354) 참고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 장애 확인의 경우에는 현 시점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허위·부정 등록 확인)

- 감사원 감사,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대상자 중 장애정도조정을 위해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심사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감사 등)

-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 심사요청서」 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 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행복e음상 장애심사 사유 구분】**

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의 신청을 위한 심사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의 장애등록 관련 심사
3. 기타(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 대상자 중 장애정도조정 등에 의거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4. 기타(허위부정등록확인)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건 등 관련자에 대해 허위·부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등록 당시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행복e음상 장애심사 유형 구분】**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는 경우**  
 -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해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력을 통보 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기존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재판정(예정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이내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3. 재판정(경과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재판정 시기가 경과한 경우  
 예 재진단 기한일 19.12.20, 재판정 신청일 20.1.5.
4. 직권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심사사유가 기타(감사 등, 허위·부정 등록 확인)인 경우
5. 서비스재판정 - 서비스수급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6.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체장애가 동일부위(같은 축의 팔·다리 등에 있는 경우 그 유형과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조정**  
 ※ **다만, 뇌병변의 원인으로 2000년 이전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가 동일부위의 뇌병변장애를 신청한 경우: 조정 또는 서비스재판정**
7. 이의신청 -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2) 심사용 구비서류의 처리**

- (서류 보관)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보관**하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비서류를 송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송부받아 스캔 저장**하도록 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 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 공단은 시·군·구(읍·면·동)에서 송부받은 일체의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송부받은 심사 관련 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반환함.
- (서류반환 요구) 민원인이 장애정도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는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서식6)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실시
  - ※ 심사서류는 **심사완료(장애정도결정,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후**에 반환 가능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며, 행정기관(관할지 읍·면·동)에서 원본 보관하여야 함.**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장애정도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또는 **심사반려**”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원본 반환이 가능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등록 대리신청 보호자와 동일)임을 확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서식3)를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 본인 또는 보호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용도 명시) 필요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요청기관의 양식에 따름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를 기재할 수 없음.  
다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공단의 장애정도 결정서 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그 외 장애심사 관련 구비서류의 보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해당 지자체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실시함(국가기록원 발간 「기록물 관리지침」 등 참고)

#### 【장애정도 심사서류 처리 유의사항】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접수 및 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결정)을 하는 주체는 해당 지자체장임.
- ◇ 이러한 장애인 등록에 관한 공공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의 생산 및 관리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심사 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을 하여야 함.(해당 지자체의 기록물 관리부서에 보존기간 등을 확인 필요)

## 5 장애정도 정밀심사

### (1) 정밀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운영 중

### (2) 심사업무기준

-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름

### (3)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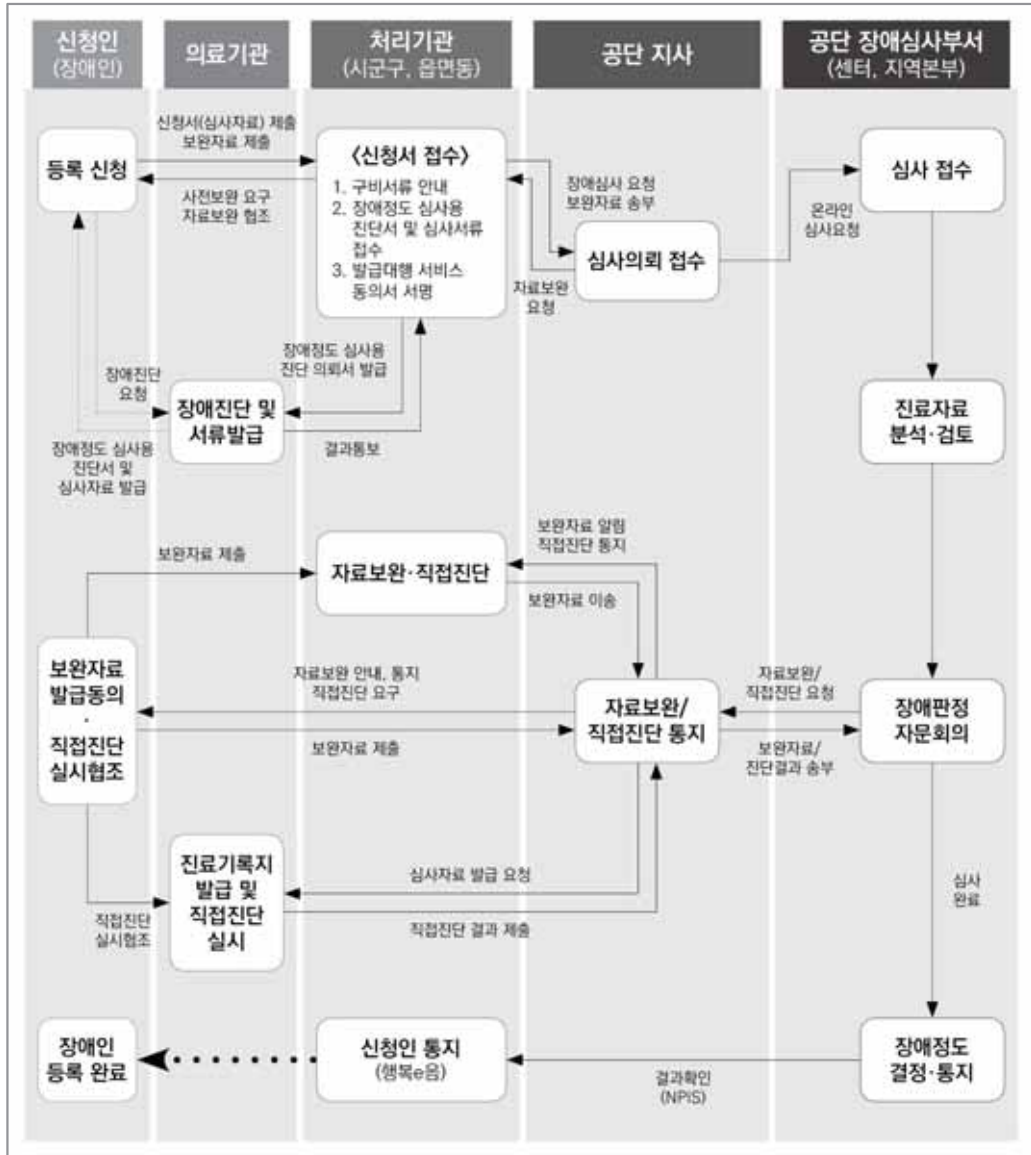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 보행상 장애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심사

### (4) 심사대상

- 장애인등록 신규, 조정, 재판정 신청을 한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재판정 중 '서비스재판정'에 해당)



(5) 장애정도 심사 절차





## (6)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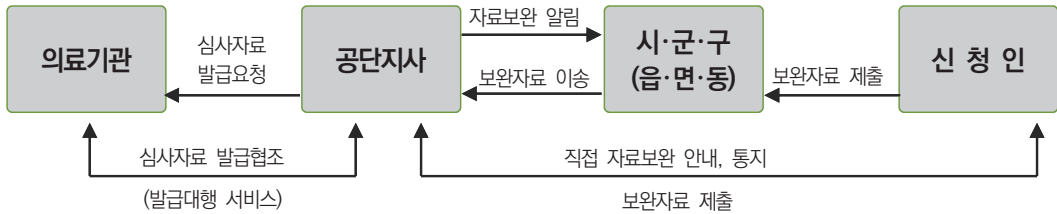
### 가. 자료보완

- 공단 지사에서 구비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공단은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 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료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읍·면·동으로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 상 '장애정도심사 신청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 화면을 호출하고, 진행단계를 '보완자료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 (심사자료 발급대행)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 동의서」란에 동의했거나, 공단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의5서식)를 별도 징구해야 함
-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CD) 및 판독지 등
    - ※ 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심사반려) 공단은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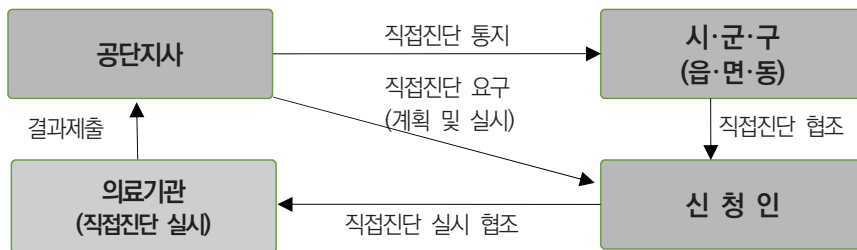
【자료보완 흐름도】



나. 직접진단

- 장애정도심사규정(복지부 고시 제2023-43호) 제9조제4항에 의거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서면심사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진료 예약 후 신청인과 동행하여 직접진단 실시 및 결과를 수령함.
- (직접진단 기한)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21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 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직접진단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반려) 공단은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직접진단 흐름도】



#### 다. 심사반려(시·군·구(읍·면·동))

-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1) 장애인등록(또는 장애정도 조정) 신청 또는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거나 신청인이 사망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2)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 시·군·구(읍·면·동)는 장애정도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 (반려통지)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서면 등을 통해 심사반려 통지함

#### (7)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근거) 장애정도심사규정(복지부 고시 제2023-43호) 제14조
- (심의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 심사결과 이의신청 건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 장애정도 판정 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공단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건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
- (구성)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복지부) 등
- (운영) 심사 안전에 따라 위원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 진행,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며, 심사대상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면심사, 직접진단 또는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음.



##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정도 결정 처리

### (1) 심사결과 확인

-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음(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심사소견, 장애정도,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함**.
  -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 의뢰했다라도, 공단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로 심사된 경우는 직권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심사결정서를 통지함. (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되었음을 행복e음에서 확인가능)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의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결정함.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중 일부 설명】

- ※ 결정보류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2) 종합 장애정도의 판정

- 단일 장애의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 그대로 판정
-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 장애정도를 결정하여야 함**.  
 ※ 중복 장애 합산은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 따름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의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음을 유의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예** 좌측 지체(하지관절)장애와 좌측 편마비(뇌병변장애)는 중복합산 불가  
우측 지체(하지관절)장애와 좌측 편마비(뇌병변장애)는 중복합산 가능  
지체(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중복합산 가능
-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3) 장애정도 결정처리(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일 : 장애정도결정일
- 장애인 등록 담당이 행복e음 상 「심사결과반영판정」을 처리해야 진단내역에 공단의 심사결과가 반영되고, 심사완료 상태로 변경됨. 이후 진단내역 등록결과를 우선 확인하여 (2)종합장애정도의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
- 종합장애정도의 판정시에 행복e음 장애정도심사 대상자 관리의 ‘연금공단 장애심사결과2(참고용)’에서 중복장애 합산 관련 안내문구를 참조하고, ‘**중복 장애 합산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합산 예외에 해당하는 장애는 이력처리 함



### 【행복e음상 전산 확인방법】

- ▶ 심사결과반영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정도심사대상자 관리 > 심사결과 반영 판정 버튼 클릭
- ▶ 진단내역확인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진단내역 등록사항을 확인
- ▶ 종합장애정도판정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인진단내역 등록 > 종합장애정도판정 버튼 클릭

### 【행복e음상 장애인 진단내역 등록 유의사항】

- ▶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2개 이상 입력가능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 입력)
  - 단, 중복합산 판정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주장애·부장애 두 가지만 합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합산 판정하지 않도록 주의
- ▶ 이력장애 : 과거 장애로 **등록된 적이 있으나** 상태 호전 등으로 현재는 **유효장애**가 아닌 경우

## 7 민원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장애정도 결정서」(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서식9)과 맞춤형으로 출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발송
    - ※ 「장애정도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 란은 심사결과 외 기존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장애정도결정서」 하단에 있는 이의신청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안내하도록 함. (이의신청은 원심사에 대해 1회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행복e음상 전산 확인방법】**

- ▶ 심사결과통지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인정도심사대상자 관리)정도결정서및자료보완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장애인정도결정서 &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서 출력

- (신규 등록 대상)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저소득여부 등 공적자료 및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상담시물레이션을 활용하여 신청가능한 서비스 안내
  - 신규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안내

###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지원 가능한 서비스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상담결과

성명	장애유형	장애수준	욕구유형	소득수준	생애주기
홍길동	시각	중증	일상생활주거	일반	청년

▶ 맞춤형 복지서비스

욕구	서비스명
일상생활	① 활동지원 ② 장애인 연금 ③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④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주거	①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② 설비장애인생활시설인소이용료지원(현) ③ 능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세)



**상담 시물레이션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 장애인 욕구와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안내
- ✔ 장애인 서비스 맞춤형 분류체계 기반
- ✔ 서비스 제공 정보(선정 기준 등) 행복e음 정보와 자동 연동



## 8 이의 신청 등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단,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가능)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가능)

###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 안내】

1. 행정심판·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기각, 인용 등 판결(재결) 결과를 공단(본부 장애인지원실)에 통보해야 함(〈p.79참고2〉 예시 참조)
2. 행정심판·소송의 인용 판결(재결)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반드시 아래 가. 또는 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 가. 지자체가 공단에 심사의뢰하지 않고 직권 처리
    - 행정심판·소송의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정도가 판시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단에 심사의뢰가 불필요하므로,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행복e음 장애인진단내역등록)·진단내역 등록)등록구분: 장애정도심사 주(부)장애)
    - 이 경우 재판정 기한은 공단의 원심사에 따른 재판정 기한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p.220」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정 기한을 참고함
    - 요청구분 코드 '7. 행정심판(소송) 결과 반영'으로 변경내용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전송하고 심판(소송) 결과를 공문으로 공단(본부 장애인지원실)에 통보해야 함(〈p.79참고2〉 예시 참조)
    - ※ 행정심판·소송 결과의 진단내역 등록시 유의사항  
→ 장애진단일, 장애정도결정일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원처분 결정일자로 함
  - 나. 지자체가 공단에 심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행정심판·소송의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정도가 판시되지 않아 공단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 심사 의뢰
    - 「장애정도 심사요청서」 하단 특이사항(메모)란에 심사의뢰 사유(재진단 기한이 필요한 경우 등) 기재 및 판결문 첨부
    - 요청구분 코드 '4. 행정심판(소송) 재심사'로 공단 재심사 의뢰하고 심판(소송) 결과를 공문으로 공단(본부 장애인지원실)에 통보해야 함(〈p.79참고2〉 예시 참조)  
\* 공단은 판결내용 및 심사의뢰 사유를 참고하여 심사결정
3.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경우
  - 지자체에서 조정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함
  - 조정권고 불수용 시 : 행정심판(소송) 계속 진행
  - 조정권고 수용 시 : 위 2.와 같이 처리



〈참고 1〉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의견 등 요청 기안문 예시**

**기관명 (시군구 또는 읍면동)**

수신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장애인지원실장)

제 목 장애등급심사 관련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의견 요청

다음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에 대한 귀 공단의 검토의견을 . . .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청구인(원고)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심사 결정일	
청구유형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 행정소송 <input type="checkbox"/> 1심 <input type="checkbox"/> 2심 <input type="checkbox"/> 3심		
청구(사건) 번호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청구서 또는 소장에 대한 답변 의견 <input type="checkbox"/> 청구인(원고)의 보충서면에 대한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신체감정 시행에 대한 의견 <input type="checkbox"/>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input type="checkbox"/> 판결내용에 대한 의견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사항	(참고할 내용을 자세히 기재)		

첨부 : 청구서, 소장 등 사본. 끝.

**발신자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참고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통보 기안문 예시

기관명 (시군구 또는 읍면동)

수신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장애인지원실장)

제 목 장애등급심사 관련 행정심판(소송) 결과 통보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판결 내역

청구유형	사건번호	청구인(원고)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각	인용 (패소)	조정 권고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행정소송 <input type="checkbox"/> 1심 <input type="checkbox"/> 2심 <input type="checkbox"/> 3심						

\* 인용(패소) 시 수용 여부 :  수용  불수용(항소, 상고 제기 예정)

\* 조정 권고 시 수용 여부 :  수용  불수용

첨부 : 판결문(인용, 패소, 조정권고의 경우에 한함) 사본. 끝.

발신자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참고 3〉

법률 검토 사항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면 그 것은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됨
-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에 대한 효력이지만 판결 이유에 장애 정도를 특정하여 판시한 때에 그 보다 낮은 장애정도를 인정한다면 원고가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종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할 것이므로 시·군·구청장과 공단은 실질적으로 판결이유에 기속됨
- 장애인복지법은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 장애판정 취소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장애 정도를 판단한 때에 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할 대상이 아님**
  - 또한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취소판결과 달리 처분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시 장애등급 결정취소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 등급을 판시한 경우는 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음**



## 2-3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 1 개요

- 장애인등록 이후에도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록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 절차는 ①등록장애인이 장애정도 상향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장애정도 조정'과 ②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나눌 수 있음
-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의 경우에도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에 따른 장애심사 처리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장애정도 판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 장애정도 조정 신청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 등록 및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함
  - ※ 장기이식 수술 시행 후 장애인 본인이 장애정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
- 최초 장애진단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등 안내,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정도 및 서비스 수급자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철저히 안내
- 장애정도의 조정 신청자격은 등록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
  -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은 자 포함)

- 신청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확인서」(서식12)하고, 확인서에 신청인(대리인) 서명 후 제출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은 보관토록 함(절취하지 말고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토록 함)
  - ※ 심사서류와 함께 공단에도 사본을 송부함
- (유의사항 안내 필수) 장애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 상승(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정도 하락(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 미해당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장애정도와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이 가능함을 조정신청 전에 반드시 안내
- 장애인등록 및 심사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의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조정함
-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유지
  - 신청인이 장애정도 조정신청 취소한 경우(장애정도심사결과 통지 전에만 취소 가능)
  -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또는 심사결과 ‘확인불가’, ‘결정보류’된 경우
-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상향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등록 처리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정도 결정 처리(p.73)”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장애정도 판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조정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처리함
- 장애정도조정일: 장애정도결정일
  - 장기이식자의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일/진단일/진단서 접수일/장애정도결정일 모두 조정신청일로 입력함

### 3 장애인정도 재판정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재판정은 아래 유형으로 구분되며,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진단 및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의무적 재판정) 재진단(판정)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개별 사업에서 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한 경우
  - (직권 재판정) 허위·부정 등록 신고, 또는 감사,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심장·신장·간·폐 이식자, 수사결과 반영 등 장애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심사없이 직권으로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재판정의 처리는 장애재판정 유형에 따라 행복e음 「재판정대상자관리」, 「장애정도 심사신청」, 「진단내역 등록」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적 재판정】

▶ 장애인복지(신) → 현황/사후관리 → 재판정 대상자 관리 → 재판정 신청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정도심사 신청  
심사유형 : 7-서비스재판정

#### 【직권 재판정】

▶ 정밀심사가 필요없는 경우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진단내역 등록

▶ 정밀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정도심사 신청)심사유형:6-직권재판정

- 재판정 장애심사 결과 처리는 기본적으로 신규 장애인등록 처리 방법과 동일하므로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정도 결정 처리(p.73)」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장애정도 판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의 경우와 동일

## 2-1 의무적 재판정(재진단 기한 도래에 따른 재판정)

### (1) 재판정 대상과 시기

- 장애인등록 담당은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도록 함
  - 재판정시기는 장애인등록 시점에 재판정 주기와 재진단(판정) 기한을 등록하여 기한이 도래되는 대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함
- 재판정 주기와 재판정 기한은 아래 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
  - 2011.4.1. 이전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적용 또는 장애진단서 상 진단의사 소견에 따라 등록
    - ※ 진단의사가 재판정 시기를 미기재하거나 재판정 불필요로 기재하여도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재판정 기준이 있으면 재판정 대상임.(1982~2011 장애등급판정기준 : 복지부홈페이지>정책>장애인>알림마당 (연혁별 장애등급판정기준 조회))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재판정 기준이 없으나 진단의사가 재판정 시기 기재 시 재판정 대상임
  - 2011.4.1. 이후 : 공단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 재판정 주기 및 재판정 기한을 결정(장애정도결정서 상 기재)
- 장애인등록 담당은 행복e음 상 등록된 재진단(판정) 기한이 있더라도 재판정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재판정 통보하여야 함.



### 【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 】

장애유형	도입년도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2010년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2010년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2010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2010년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10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2010년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2022년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2003년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2003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2019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2) 재판정 절차

### ① 재판정 안내: 재진단(판정)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예정자(재판정 기한이 도래하는 장애인)'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해당 장애인이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송하고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예** (재진단 기한) '23.8.10, (자료제출 기한) '23.7.10, (통보일) '23.5.10일 전까지

※ 재판정 통보 누락으로 재판정기한 경과한 경우(재판정 경과자) : 재판정 누락자 발견한 경우에는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 후를 재판정 기한으로 지정, 2개월 후를 자료제출 기한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발송

**예** 재진단 기한 : '22.12.10, (통보일) '23.5.31, (자료제출 기한) '23.7.31(2개월 후)

- 재판정대상자가 판정기준 미달 등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재판정 안내 및 취소 절차에 따름

### ② 재판정 촉구: 재진단(판정)기한 1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서식7)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됨을 안내

※ 자료제출 기한일은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의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설정

- (신장장애 재판정대상)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단의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혈액투석 정보를 활용하도록 재판정(촉구)시 아래의 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

※ 「신장장애 재판정 절차 안내문」(서식1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별지 제1호의5 서식),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서식1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아 장애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혈액 투석 정보에 한하드로 공단 심사 요청 시에 재판정 대상자의 투석방법이 혈액투석인지 복막투석인지를 확인하여 정보 전송

※ 행복e음 시스템 「장애정도심사신청」 화면에서 혈액투석여부 입력 후 심사의뢰 전송(혈액투석 중인 경우 'Y', 복막투석 중 또는 신장이식 상태인 경우 'N' 입력)

※ (유의사항)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혈액투석 정보는 요청일 2개월 이전 자료까지 이므로 공단 심사 시 추가자료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비해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 신청을 안내

- 장애인이 상기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장애심사요청서」(원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사본을 공단에 우편 송부(심사 의뢰)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서류를 직접 구비 제출하여야 함
- 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별도 제출없이 기존 등록된 진단서를 활용하되, 등록된 진단서가 없을 경우 장애인에게 진단서를 징구토록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별지 제1호의5 서식),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서식15)

### ③ 재판정 유예

-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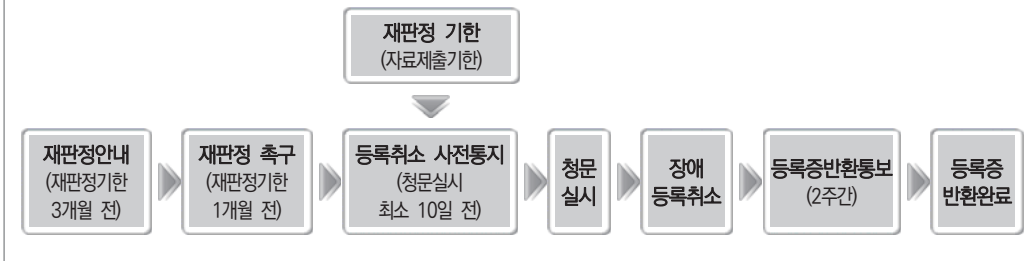
※ 재판정 유예에 따른 유예기한 입력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 (진단내역등록 > 진단내역 수정 > 유예기한 수정)

**【재판정 기한 유예 예시】**

- \* 사례별로 치료기간 충족시점, 장애진단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유예기한 결정
  - 뇌병변장애 재판정 시기에 뇌출혈 등이 다시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인 경우 유예
  - 호흡기장애 입원치료력이 없다가 재판정 시기에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인 경우 유예  
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중인 경우는 재판정 시행하여 적정한 장애정도 유지
  -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치료기간 충족되지 않은 경우 치료기간 충족되는 시점까지 유예
  - 공단심사 시 결정된 재판정 도래일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의 차이가 1년 이내인 경우
- 예) 국민연금공단 원처분 결정일 2018.1.1.(2년 후 재판정 : 2020.1.1.)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 2019.6.1.인 경우

④ 재판정에 불응하거나 재판정 결과 장애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재판정(불응 또는 장애 미해당)에 따른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 ⇒ 청문실시 ⇒ 장애인등록 취소 ⇒ 등록증 반환 명령 및 반환 완료 : (p.97)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름
- 재진단 기한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 장애인 등록 취소 이행 철저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

- 2016년도 재판정 기한 경과자에 대한 지자체 조치 불이행 및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소홀 지적
- 향후 재판정 기한 경과자 지속발생 및 조치가 미흡할 경우, 장애인등록권자인 해당 지자체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도 동일사례 반복 발생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분 불가피



## 2-2 서비스 재판정(특정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재판정)

- (적용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일부
  - 개별 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등록장애에 대한 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다만, 지체·뇌병변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는 공단의 중증 외상장애 확인조사로 장애정도심사를 대신할 수 있음
    - ※ 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심사완료 이력이 있으나 다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심사대상임)
    - ※ 장애인연금 신청시 주장에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부장애를 이력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절차)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내용 참고하여 절차 수행
  - 장애정도 재심사의 기준, 방법, 절차는 장애정도 심사 규정에 따름
  - 또한,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 구비 서류는 동일
- (기타사항) '07. 4. 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자이나 「행복e음」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공문 요청 및 회신) 후 행복e음을 통해 자료보정 요청함
  - ※ 정보보정 요청 절차는 동사업 지침 p.99와 동일
  - 신청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확인서」(서식12)하고, 확인서에 신청인(대리인) 서명 후 제출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은 보관토록 함(절취하지 말고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토록 함)
    - ※ 심사서류와 함께 공단에도 사본을 송부함
  - (유의사항) 장애 정도 재심사로 지금의 장애 정도가 변경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 정도 하락시 장애 정도와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 【연금공단 중증 외상장애 확인조사】

- 공단 심사 없이 종전 지체·뇌병변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읍·면·동)가 공단에 중증 외상장애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공단의 출장확인결과 '중증 외상상태'임이 인정되면 장애정도심사 없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
- (중증 외상장애 확인조사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 중증 외상장애 확인조사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인조사 요청이 반려됨
  - 확인사유 : **장애인연금 신청**
  - 장애유형 :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 **종전 지적장애인**으로 기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
  - 장애정도 : 종전 1급(19.7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 ※ 지체상지기능 2급과 지체하지기능 2급을 중복합산하여 지체1급도 가능
  - 장애부위 : **사지마비(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 확인방법 : 기존 장애진단내역 및 등록된 장애진단서를 조회하여 확인
  - 해당 장애의 공단심사이력 : 없음
    - ※ 해당 장애가 공단의 심사를 받아 등록된 경우와 당초 지정된 재판정 시기가 도래(경과)한 경우는 중증 외상장애 확인조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 입원 여부 : 입원하지 않은 상태
    - ※ 의료기관 입원중인 대상자는 중증 외상장애 확인조사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요청
  - ※ 확인조사 요청 대상자의 기존 장애진단서를 첨부
- (공단 확인조사) 공단직원이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연락하여 방문일정과 장소를 협의 후 방문하여 중증 외상장애 확인 항목별 조사지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함
  - ※ 확인항목 : 개인위생, 목욕,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 입기, 배변·배뇨, 보행
- (결과통보) 중증 외상장애 확인서(해당, 미해당, 사지마비 미해당, 확인불가)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중증 외상장애 해당'으로 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외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정도심사 진행



## 2-3 직권 재판정(공무원의 직권으로 재판정)

### (1) 장기이식자 재판정

- 매년 4회 보건복지부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이식자 명단을 교부받아 해당 지자체에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함.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신장, 심장, 간, 폐 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장애정도 조정(기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내(2주)
  - 의견청취 기한 종료일 다음날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직권 조정·등록 후 종합장애정도판정을 하도록 함.

- ▶ 행복e음 상 이식받은 장기와 동일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이력 처리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직권 등록
  - 신청일/진단일/진단서접수일 :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한 보건복지부 공문발송일로 입력
  - 장애정도 결정일 : 직권판정 당일로 자동입력
  - 재진단 기한일 : 영구재판정제외(9999.12.31.)로 입력
  - 의사명/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 : [없음]/[00][0000]

-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기한 보정하고, 보정된 재진단기한이 도래하면 재판정\*을 실시함
    - \* '2-1 재진단 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재판정'에 따라 재판정 실시
    - ※ 좌안 시력저하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록자가 우안에 각막이식 한 경우는 재판정 대상 아님(중전 시각장애 6급 외에 1~5급은 좌/우 상관없이 각막이식한 경우는 재판정 대상임)
  - (원칙) 각막이식일 이후 장애진단을 받고 공단 시각장애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재진단 기한일 수정 불필요(공단 심사결과에 따름)
  - (예외) 다만 공단 재판정일이 각막이식일 보다 선행되는 경우 각막 이식 후 1년 후로 재진단 기한일 수정
- 장기이식 수술 후 본인이 장애정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정도 조정신청 절차 준용하여 처리

- 장기이식자의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일/진단일/진단서 접수일/장애정도 결정일 모두 조정신청일로 입력함

※ 심장·신장·간·폐 이식자는 별도 심사없이 직권으로 장애정도를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 악화를 주장하는 경우 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의뢰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까지 기존 장애정도를 유지함.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감사 등)

- 장애정도심사 진행시 장애검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2)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를 등록한 사람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등을 통과하여 운전면허를 유지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토록 조치

○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우 기존 장애정도의 적정성 의심 및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명단을 교부받아 해당 지자체에 명단 통보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의 운전면허 종별 보유 가능/불가능한 시각장애 장애정도(장애상태)를 확인 후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진행함.

• 일반적 재판정 진행절차와 동일([p.86 재판정 절차 참조](#))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감사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썬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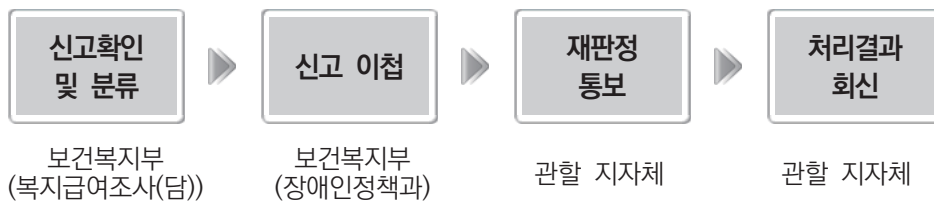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썬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3) 부정등록 신고시 재판정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시·군·구를 통해 장애인 부정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직권 재판정을 진행함.
  - 「영구재판정 제외」로 등록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허위·부정 등록이나 장애상태의 변화가 의심될 경우 직권재판정을 통해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정도를 유지해야 함.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절차



- (신고 확인 및 분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접수된 건을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 장애인정책과로 분류
- (신고이첩)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신고대상자,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부정등록이나 장애상태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공문으로 신고사항 이송 및 처리요청(신고내역 및 처리절차 붙임)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사항 보고서(서식16)
- (재판정 통보) 관할 지자체에서는 등록정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장애정도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진행
  - 일반적 재판정 진행절차와 동일([p.86 재판정 절차 참조](#))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감사 등)



- (처리결과 회신) 심사결과를 근거로 장애정도 조정 또는 환수처리(부정등록으로 인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정수급 시) 등 부정신고 처리 결과를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사항 보고서(서식16)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공문 회신

\* 장애인등록 취소(또는 장애정도 변경) 시 장애인등록증 회수(또는 재발급) 필요

○ 신고인에 대한 처리

- (조사결과통보) 부정수급 신고를 이첩 받은 부서에서는 조사 완료시 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가. 피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징계) 및 보조금 환수 예정금액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나. 수사의뢰, 고발 등 사법적인 처리 진행 상황

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주요 사실

라.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요 요지  
마.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

- (신고자 보호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4 조정 및 재판정 심사결과 처리

※ 조정 및 재판정에 따른 장애심사 결과 처리는 아래 (1)~(3)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신규 장애인등록 시의 심사 결과 처리 방법과 동일하므로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특히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장애정도 판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처리함

##### (1) 심사결과 확인

-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력 처리함.
-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 되거나, 장애정도 조정 또는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을 유지

※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인 경우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여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함.(이 때 재진단기한은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직권 수정함)

※ 결정보류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2) 장애정도조정(변경)일 : 장애정도결정일

###### 【행복e음상 전산 확인방법】

- ▶ 심사결과반영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정도심사대상자 관리> 심사결과 반영 판정 버튼 클릭
- ▶ 진단내역확인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인진단내역등록> 진단내역 등록사항을 확인
- ▶ 종합장애정도판정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인 장애정도 관리 → 장애인진단내역 등록> 종합장애정도판정 버튼 클릭

###### 【행복e음상 장애인 진단내역 등록 유의사항】

- ▶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2개 이상 입력가능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 입력)
  - 단, 중복합산 판정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주장애·부장애 두 가지만 합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합산 판정하지 않도록 주의
- ▶ 이력장애 : 과거 장애로 등록된 적이 있으나 상태 호전 등으로 현재는 유효장애가 아닌 경우

### (3) 민원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 (장애정도 변동·상실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담당자는 장애인 등록과정에서 장애정도가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정도 미해당'인 신청인에게 복지서비스의 변화 및 자립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참고1)을 활용하여 안내
    - ※ 장애판정결과 장애정도하락(장애정도 미해당 포함)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 요함.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를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9. 6. 4.>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20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사람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대책,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정보
  - 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정보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
  - 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 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정보
  - 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보
  -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장구(補裝具)에 대한 보험급여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등에 관한 정보
  -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에 관한 정보
  -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장애인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 5 장애인등록 취소

-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 ①재판정 불이행한 경우, ②장애 미해당 결정 통지 이후 90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장애 미해당 결정 통지 이후 90일 내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 통보된 경우,
-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문 시행 최소 10일 전에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식으로 송달
-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에 따름
- (장애인등록 취소) 청문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 토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청문결과 결정일
    - ※ 청문기간 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소송 제기일로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한 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함.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정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처분 결정일자로 소급(재진단기한도 원심사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재판정주기 계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함.
    - ※ 예 '18.5.6 원처분 등급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사결과('18.7.8)가 장애등급 3급 및 재판정주기 2년일 경우, 본 건은 장애등급 3급에 대해 등급결정일자 '18.5.6로 소급 적용 및 재진단기한 '20.5.6로 적용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을 안내
    - ※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환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 6 장애인등록 정보 관리 철저

### (1)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입력 및 관리

-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정도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함.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
  - ※ 사망한 자의 장애인등록 취소 : 실제 사망일로 취소 처리함.
- 장애인복지담당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 건에 대해 **직권 반영시** (p.77 참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산 송신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철저
-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은 읍·면·동에서 변경 처리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 확인 방법은 읍·면·동의 보고 확인, 출장 확인 등
- 시·도 장애인복지담당은 시·군·구에서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확인하는 등 등록장애인의 전산 관리를 점검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행복e음 시스템내 재진단 기한 입력 철저
  - (지적사항) 재판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을 누락한 경우
  - (조치사항) 2011.4.1일 이전 신규 및 재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 재판정 필요 여부 검토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 입력
-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적사항) 재진단 기한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치사항) 재판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장애 재판정 촉구 및 등록 취소 절차 이행
- ▶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연금,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므로 관리 요망



## (2) 정보보정 요청 대상 및 절차

- (직접처리)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아래 보정유형에 대해서는 행복e음상 업무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음

보정유형	내용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등록구분, 장애재진단기한, 장애정도결정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미심사 건에 한정</li> <li>단순 입력 오류 등으로 자료 정정이 필요한 경우</li> </ul>

-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등록구분) 장애인 진단내역등록 화면에서 진단내역수정을 통해 기존 유효진단을 이력 처리하고, 올바른 진단정보를 직권 등록 후 종합장애정도판정을 하도록 함.

※ 행복e음>장애인복지(신)>장애인등록관리>장애인 장애정도 관리>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장애재진단기한, 장애정도결정일 등) 장애인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올바른 정보로 진단내역을 직접 수정처리할 수 있음

※ 행복e음>장애인복지(신)>장애인등록관리>장애인 장애정도 관리>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요청)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아래 보정유형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해 자료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정요청 건에 대해 내부 결재 후 결재문서를 첨부하여 자료보정을 요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5일 이내 처리됨.

※ 행복e음>자료정비>자료보정 요청관리>보정유형 추가

보정유형	내용
장애재진단기한 장애정도결정일 (종전 장애인등급판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심사 건을 대상</li> <li>각막이식, 의무재판정 결과 '결정보류' 등으로 장애재진단기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오입력 등으로 장애정도결정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ul>
공단심사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번호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 공단 지사로 문서로 요청)</li> </ul>
고유식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증빙자료 :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li> <li>* 고유식별번호 보정시 공단에 별도 공문 송신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포함)</li> </ul>

- (보건복지부로 요청)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아래 보정유형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공문 요청할 수 있음
  - '장애등록정보 보정 요청' 공문을 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발송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3주 이내 처리되며, 별도의 회신은 없음

보정유형	내용	증빙자료(예시)
최초등록일*/ 재취득등록일**	단순 입력 오류 등으로 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록당시 장애진단서 등
장애유형등록구분	공단심사건 중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일반장애인 상호 변경되는 경우	해당없음

\* 최초등록일 : 장애인으로 최초 등록된 일자

\*\* 재취득 등록일자 : 장애인으로 등록취소 처리 후 다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자

- 복지부는 자료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등록구분' 보정요청은 국민연금공단에도 자료보정을 요청하도록 함.

## 7 기타 행정사항

### (1)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1)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음.



- 사망장애인에 한하여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의 전산망에서 출력
  -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http://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
  - 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영문 이름 및 주소는 행복e음 상에서 출력 전 더블클릭하여 입력가능
    - 경로** 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 대상자 정보 조회 > 증명서구분: 장애인영문증명서  
※ 영문 이름, 영문 주소는 기존대로 마우스 우클릭 > 편집모드를 통해 입력
    - 참고** 지자체의 영문 기관명이 변경될 경우, 기관총괄책임담당자께서는 '시스템관리' > '기관정보관리' > '지자체정보관리' > 우측 하단 '지자체영문명'에서 정보를 수정 등록
  - (허위등록장애인)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 불가, 단, 허위로 등록된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 선택 가능함

## (2) 장애인등록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 등록 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 1부,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등록 취소 신청일
- 처리방법 : 담당자는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취소처리함
  -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취소처리(단, 장애인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소처리)
  - ※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 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장애인자격이 복원되지 않으며,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서 다시 등록하여야 함을 안내 필요.



**(3) 홍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함.

**(4)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제출(공문 시행)하여야 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업무는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



## 2-4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 1 목 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13.1.27)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 및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절차를 안내

### 2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인 등록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 난민인정자(18.3.20 시행), 특별기여자\*\*

\* '11.12.15.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 결혼이민자” → “F-6”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F-2 중 결혼이민자만 포함됨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8793호) 공포 및 시행(22.1.25.)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류자격 참조]

구분	정의	확인 자료	
재한 외국인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자 (F-6)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난민인정자 (F-2)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증명서,
	특별기여자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외국인등록증 및 법무부 확인*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거소신고한 사람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재외국민 거주자 등록제 실시(15.1.22),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16.7.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법무부 확인 방법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필요시 법무부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특별기여자 명단을 통보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난민인정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특별기여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체류자격 입력 시 '난민인정자 등'으로 선택 입력

### 【자격 확인관련 주의사항】

- ※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새울시스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함.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담당부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 권한 승인 요청 필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 등록'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다만, 거소신고만 하는 등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필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하여야 함.



## (2)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심사 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 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므로, 수술기록지 등을 **번역공증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공단 지사로 송부
- 공단 검토 후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지체(절단)장애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양측 다리 길이 차이(5cm)
- 지체(척추)장애 : 척추고정술
- 뇌병변장애 : 선천성 뇌성마비
- 시각장애 : 안구적출
- 각종 이식의 경우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 외국인 등 장애정도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또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으로 문의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정도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 등을 안내함.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배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함.
-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공증 자료에 대한 확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3) 장애정도심사 요청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직접진단, 발급대행 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지원)

###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문(참고1)」을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됨.

※ 「장애정도결정서」 중 '중복합산 안내' 란은 심사결과 외 기존 다른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장애정도결정서」 하단의 이의신청 안내문구를 삭제하여 안내하도록 함. (이의신청은 원심사에 대해 1회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 아울러 등록된 외국 장애인의 경우 6개월마다 적정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외국 이주 등)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함.

### (7) 권리구제 및 사후관리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국내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4 기타 행정사항

#### 가. 외국인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

※ 자격변동 및 출국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 확인으로 반기별로 확인 후 변경사항 입력

#### 나. 등록장애인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와 거주자\* 간의 신분변경에 따른 처리 안내

- 외국인 등이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등록된 장애인정보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복e음을 통해 자료보정을 요청하며 재진단 기한일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정보보정 완료 즉시 재판정 통보하여 공단 심사를 거치도록 함.

국내 등록장애인이 재외동포가 되어 장애인 자격이 중지되었다가, '13.1월 이후 장애인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신규 장애인 등록함. 단,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있고, 재진단 기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공단의 심사과정 생략가능

\* 거주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 2-5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 1 개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14.11.4., 시행 '15.5.5.)에 따라 **동일부위에 대해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15.5.5.이전	'15.5.5.이후
<b>장애부위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경우 장애인등록 제한</b> ※ 장애부위가 상이등급 판정받은 부위와 다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가능	<b>장애부위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허용</b>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합산가능

- 장애인등록 유형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 일반장애인 :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부위를 장애등록 신청한 경우
    -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장애인으로 접수



## 2 장애인등록 상담

절 차	주 체	접수기관
(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 시 국가보훈처의 장애인 등록 필요자료 수집·활용 동의	신청인	주민센터
(2)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 장애부위, 대상구분(장애인등록유형) 확인	주민센터	
(3) 등록정보 중 의결사유 미확인자는 해당 보훈(지)청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및 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 ※ 의결사유 확인자는 보훈(지)청에 공문 발송 불필요	주민센터	보훈지(방)청
(4) 신청자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및 심의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에 송부	보훈지(방)청	국민연금공단
(5) 장애정도심사 의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필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6)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	
(7) 장애정도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8)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주민센터	신청인



(1) [읍·면·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록 신청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수령
  -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지자체 담당자 필수 확인 및 안내사항】**

- ▶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참고 3]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정도 기준을 참조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성을 주치의와 상담하고, 불필요한 장애인단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안내
- ▶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격(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여부)에 따라 제공가능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분 철저 및 전산에 적기 반영
- ▶ 상이부위와 다른 유형으로 일반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부위와 등록하려는 장애부위를 확인하고, '15.5.5.이전에 등록된 일반장애인 유형이 국가유공자 상이부위와 같은지(같은 경우 부정등록 여부 확인) 확인 필요
-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 이전, 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참고 7]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 수급 제한 참조
- ▶ 서비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 신청 장애인에 대하여 행복e음의 국가보훈처 정보 조회를 통해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여부 확인 필요
- ▶ 기존 또는 신규 등록 장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부위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될 경우, 중복수급제한 서비스 중지 및 환수 가능성 안내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내용별 담당기관 참조

상담자	상담내용	상담업무 담당기관
신청인	최소기준 및 구비서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공단 지사
지자체	국가유공자 상담기준 등	공단 지사



## (2) [읍·면·동]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록정보 확인
- 장애인등록 유형(일반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정확히 구분
  - ※ 자격별 장애인서비스 제한이 상이하여 정확히 구분하여 행복e음에 입력

### 【장애인등록 유형 구분 tip】

- ▶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부위(장애부위)와 동일한 장애부위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구분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부위(장애부위)와 명백히 다른 부위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 ▶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부위(장애부위)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부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 ※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부위가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부위를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경우 등록구분을 '일반장애인'으로 입력
- 예** 골절로 우측 발목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가, 뇌출혈로 인해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 발생하여 뇌병변장애 신청 시 등록구분은 일반장애인임

## (3) [읍·면·동 → 관할 보훈지(방)청] 의결사유 미확인자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및 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2일 이내)

※ 국가보훈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및 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서식13) 참고

## (4) [관할 보훈지(방)청 → 공단] 신청자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및 심의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에 송부(3일 이내)

## (5) [읍·면·동] 장애정도심사 의뢰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으로 심사의뢰
  -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 (6) [공단] 장애정도심사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7) [공단] 장애정도 결정통보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8) [지자체]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지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9) [지자체]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중복장애 합산판정】**

▶ (원칙)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 장애의 합산 및 중복합산 예외”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정도가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정함

**예**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전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하지기능 종전 4급으로 종합장애 종전 2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받음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도 **상이부위와 다른 부위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 일반장애인) **합산판정이 가능하며**, 서비스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 가능**

**예** 일반장애인 종전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종전 하지기능 4급으로 종합장애 종전 2급인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없음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가능)

▶ 단, 등록된 장애유형이 3가지인 경우 **높은 장애정도 우선으로 자동 합산판정**되므로, 일반 장애인 등록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정도가 제일 낮은 경우 자동 합산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등록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일반장애인을 포함하여 별도 직권판정 진행**해야 함

**예** 보훈대상자 종전 시각 2급, 국가유공자 종전 언어 4급, 일반장애인 지체(척추) 종전 5급의 경우

• 자동으로 보훈대상자 종전 시각 2급(주장애), 국가유공자 종전 언어 4급(부장애)이 자동 합산판정되어 종합장애 종전 1급이 되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을 받음

• 담당자와 장애인등록 대상자와의 상담 후 보훈대상자 종전 시각 2급(주장애), 일반장애인 종전 지체(척추) 5급(부장애)를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종합장애 종전 2급을 직권판정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 가능



### 3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재판정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호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5 기타 행정사항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15.5.5 이전 동일 상이부위에 대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등록 상태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중복수급방지를 위해 기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함

#### 【행복e음 시스템 처리방법】

- ▶ '진단내역등록' 화면에서 장애인 자격중지 처리 후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
  - 중지사유 : 허위등록
  - '장애인등록신청' 화면 > 장애인등록유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호대상자

- 동일 상이부위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일반장애인으로 부정등록된 건들도 장애인등록 취소 후 공단심사를 다시 받아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함
- 그 간 부정으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중복수급을 제한하고, 서비스 중지 및 환수가능성에 대해 각 사업과에서 결정
- 복지서비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등록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정보 조회를 통해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여부 확인 필요

## 2-6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 1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군 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상의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지만, 실제 장애인등록증에 '복지카드'라고 표기되어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복지카드'라 부름. 따라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같은 의미임

○ 장애인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간의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 및 그 후속 협약에 근거하여 제작 관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금융카드형 선택한 장애인에 대한 신용심사 등, 장애인등록증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기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입회비·연회비 면제 등

\* '24년부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제작 비용은 지자체 부담하고, 신한카드사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제작비용 부담

- (한국조폐공사) 장애인등록증 제작

○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 7. 1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 (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분실·훼손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 2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장애인등록 신청 시)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선택한 경우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2)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23.4월 이후 신청하여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모두 전국 호환(전국 지하철 무임)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상이유공자 복지카드에도 무임 교통요금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상이자인 등록장애인은 지하철 무임 기능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만 발급 가능하고,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불가함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만 가능하나,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는 대금 결제계좌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은행 계좌 가능

※ 농협 기관코드는 011, 012만 가능(그 외의 농협 코드는 폐지된 번호이므로 유의)

\* 농협은행(011), 지역(단위)농협(012)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기존 장애인등록증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 별도 제출시 사진 1장 제출(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 장애인등록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등록완료하였으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신용카드형태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 (2) (읍·면·동)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여 일반형(하이패스 기능 없는 경우) 신청정보는 조폐공사로 전송, 통합형(하이패스 기능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는 도로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도로공사) 통합형 신청 건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조폐공사로 전송(1일 이내)

(4) (조폐공사) 읍·면·동 또는 도로공사에서 수신한 자료 중 금융카드형 신청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5) (신한카드사) 상기 (4)항에 의한 금융카드형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자체 카드발급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함.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카드발급 심사방법(신한카드사) 】**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 카드신청 정보가 신한 카드사에 접수되는 2~3일 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 신한 카드사는 본인확인 인증을 통해 발급심사 상담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분들을 고려하여 대리통화, 채팅심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1. 공식접수 채널 직원을 통한 대리통화
  - 공식 접수채널 : 주민센터 /신한카드지점/신한은행 영업점
  - 본인확인 절차 : 상기 3개 유형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이 된 경우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선통화 심사 진행
2. 채팅심사 상담
  - 1) PC나 모바일(스마트폰에 한함)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 2) 본인인증(공인인증/휴대폰/카드인증 중 택1) 후
  - 3) '채팅 방식'으로 카드발급 심사 상담이 가능



(6) (한국조폐공사) 상기 (2), (3) 및 (5)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7) (우체국) 장애인등록증 등 우편배송

※ 기관배송 : 시·군·구로 배송

※ 개별배송(맞춤형 계약등기 협약) : 수령지로 직접배송

(8) (읍·면·동)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장애인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 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 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함.

### 3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 【재발급 대상】

- 1) 장애인등록증을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2)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3)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이 경우 반드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 4) 장애인등록증의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 (1)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작성하여 제출
  - ※ 장애인등록 완료한 신규 대상자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 읍·면·동은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력자료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변경된 신청정보 등록
  
-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 아닌 지자체에서 신청한 경우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 개별배송 협약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타지자체에서 신청시 등기발송비용 무료, 개별배송 비협약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등기발송 원할 경우 등기발송비용 장애인 부담(신청지 지자체에서 직접 등기발송)
  - 통합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인 경우, 신청받은 읍·면·동에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관련 정보 행복e음 통해 전송
  - 발급 수수료 4,000원도 관할 주소지로 이체(관련한 상세 사항과 Q&A는 추후 통보 예정)

##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 민원인이 복지로(www. 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신청 건은 행복이음에서 신청 내역 확인하여 신청 등록
  - 정부24를 통한 신청 건은 읍·면·동에서 새올시스템으로 확인하여 행복이음에 신청정보를 옮겨 등록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 정부24 신청 건을 행복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 개선 추진 중 ('24년 완료 예정)
    - ※ 통합복지카드 신청하는 경우 유의
      - : ①종전 장애인등록증이 통합형이 아닌 경우(통합형 처음 신청) 또는 ②통합형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주소지 이외의 읍·면·동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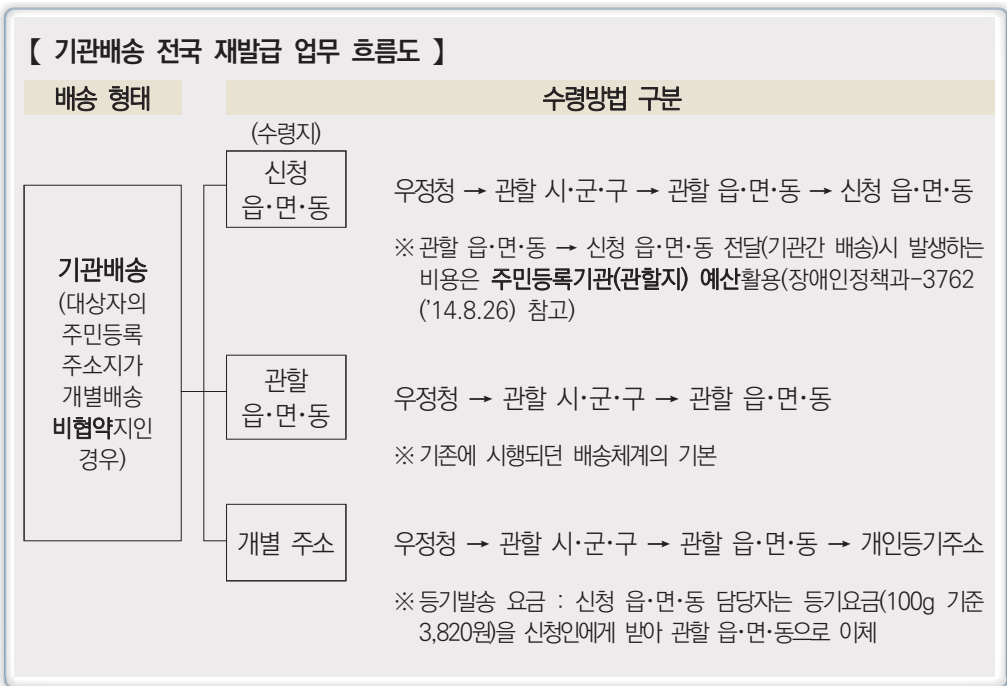
### (3) 기타 재발급 관련 사항

-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 폐기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

## 4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 가.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방법 개선

- (기관배송) 기존에 시행되던 배송체계로서 우정청과 개별배송협약이 되지 않아,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신청대상자 관할 시·군·구로 배송



- 전국재발급 시행에 의해 직접방문(관할 읍·면·동, 신청 읍·면·동) 또는 개인등기(신청인 부담)를 통해서 수령 가능
- 신청시 읍·면·동에서 수령 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읍·면·동으로 전달(행정기관간 배송)하고, 이 때 발생비용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예산을 활용하고 개인등기우편료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청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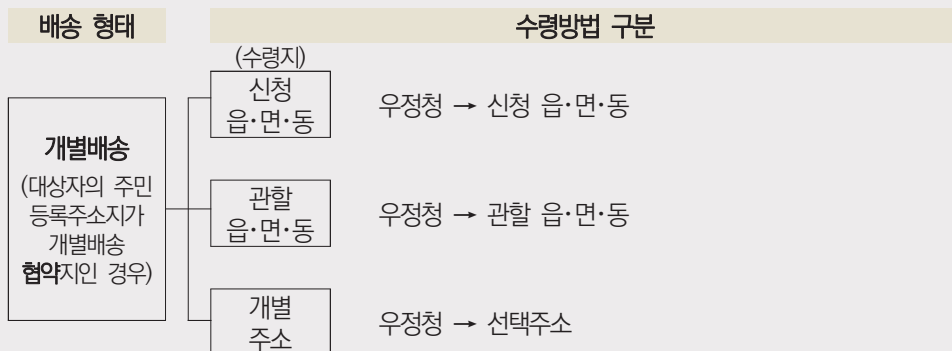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762(14.8.26) 참고

**【개인등기 수령】**

- 개별배송 비협약지역에 소속된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관할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등기발송하는 제도(14.8 시행)
  - 비협약지역이기 때문에 개인등기 우편요금을 대상자에게 별도 수납해야 함
  - 전국재발급(관외지신청)의 경우 신청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개인등기 우편요금(관할 읍·면·동→개인등기주소)을 반드시 수납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체해야 함(등기료 100g 기준 3,820원)
  - 행복e음 시스템 상 [개인등기요청주소]란은 시·군·구에서 수령한 카드를 관할 읍·면·동 직원이 등기 발송할 때 참고하기 위한 주소로, 우정청에서 이 주소로 별도 배송되는 것은 아님
  - 행복e음 시스템상 [배송지주소]란에는 관할 읍·면·동 주소가 자동입력되나, 최종 도착지는 개인등기요청주소이므로 신청시 읍·면·동 담당자는 카드신청 시 [개인등기요청주소]란에 대상자 주소 미리 작성할 것

- (개별배송) 우정청과 협약하여 행복e음 시스템 [개별배송지역 확인] 목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바로 선택된 배송지(신청 읍·면·동/관할 읍·면·동/개별신청주소 중 택1)로 등기배송됨.

**【 개별배송 전국 재발급 업무 흐름도 】**





-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개별배송 : 맞춤형 계약등기)에 의한 수령지 배송서비스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극 실시(개별협약 지자체에서 배송비 부담)

**【개별배송 등기번호 확인법】**

- 개별배송시 교부처리 확인을 위해 등기번호를 확인후(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좌측 원클릭 배송조회 ) 복지카드교부등록 > 교부미처리내역에서 교부일자 입력
- 관할지 신청의 경우 교부처리 확인법 :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관리 > 복지(통합)카드 전송내역 확인
- 전국재발급(관외지) 신청의 경우 확인법 : 장애인복지(신) > 현황/사후관리 > 복지카드 전국재발급 현황

- (전국 재발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등록기관)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 **통합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구, 통합 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받은 읍·면·동에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관련 정보 행복e음 통해 전송
    - 발급 수수료 4,000원도 관할 주소지로 이체(관련한 상세 사항과 Q&A는 추후 통보 예정)
  - ※ 개별배송 협약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타지자체에서 신청시 등기발송비용 무료, 개별배송 비협약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등기발송 원할 경우 등기발송비용 장애인 부담(신청지 지자체에서 직접 등기발송)

**나. 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투명 점자 스티커	점자스티커 부착
	

### 다.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3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유형(중복합산된 장애유형)과 유효기한 표기 중
  - 중복장애가 3가지 이상 있는 경우라도 중복 합산된 주장애와 부장애의 재판정일을 고려하여 유효기한 설정
    - \*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기한이 빠른 기준을 적용
    - \* 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재판정일 이후 6주(42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
  - 중복합산된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영구재판정 제외인 경우 유효기한에 “제한 없음”을 명시



※ 신분증형: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 라.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정도 변경 시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판정으로 장애정도 등이 변경된 경우는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 단, 신용카드 기능이 검비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 5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발급 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1)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장을 발급자로 제작
- (2) 이후 전출지로 교부된 등록증 등을 전입지로 송부
- (3)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전산 입력

### 나. **등록장애인**이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09.10.2)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 (1)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 전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별도의 장애정도 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등록 신청일로부터 부활됨(「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할 것)
  - 다만, 말소기간 중 **장애진단서상 의사 소견에 의한** 재판정 또는 의무적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여야 함.
- (2)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 후 장애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도 기존 장애인 자격 유지가 가능함.

## 6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

- (1)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 (2)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
    - 장애정도 및 유형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한이 도래된 경우
- ※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

#### 【장애인 복지카드 상태 관리항목】 ※ 22년 상반기 중 전산 반영 예정

- |              |                                      |
|--------------|--------------------------------------|
| ○ 유효(사용중)    | 복지카드를 교부하여 대상자가 정상 사용 중              |
| ○ 무효(미교부 폐기) | 발급된 복지카드를 교부하기 전에 폐기 처리              |
| ○ 무효(회수 폐기)  | 대상자가 사용하던 복지카드를 회수하여 폐기 처리           |
| ○ 무효(미회수/사망) | 장애인이 사망하여 복지카드 회수·폐기하여야 하나 미회수 상태    |
| ○ 무효(미회수/중지) | 장애인 등록취소 등으로 복지카드 회수·폐기하여야 하나 미회수 상태 |
| ○ 무효(미회수/분실) | 복지카드 교부 후 대상자가 분실하여 미회수 상태           |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교부 상태 적정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신) > 복지카드관리 > 복지카드교부등록(복지, 할인, 통합) > '교부 미처리내역', '교부이력상세' 탭 > 교부상태에 맞게 변경해야 함**

### 나.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정도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 및 법정 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사망한 경우)의 경우 사망자가 독거 장애인 등으로 실제 등록증 반환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 명령 생략 가능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장애인등록증 반납율 저조(최근 5년간 35.9%)
  - (지적사항) 2007~2011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 등록증 반납율은 35.9%로서 저조
  - (조치사항) 장애인등록증 무단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 반납이행 철저 및 유효 기간 명시



## 2-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1 공통사항

#### 가. 지원대상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는 지급 대상임

#### 나. 지원 유의사항

-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서비스 신청 처리
  - 장애등록신청단계에서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급자 자격 확인하여 서비스 신청 처리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미해당, 심사반려, 확인불가, 결정보류 판정 포함.
  - 다만, 허위·부정 장애등록으로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장애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 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신청 후 타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 신청 시·군·구에서 지급 처리(시스템상 신청지 기준임)
- 장애진단일(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정도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가능(비용지원 신청일의 자격기준이 아님)

**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일 당시 수급자이나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심사 완료 이후 수급 신청 및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아님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직권 재판정 예시】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예, 지체전환장애→지체 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다. 지원방법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심사용 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 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 2)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 시·군·구에서 청구 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관할 읍·면·동(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 행복e음에서 계좌확인 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공무원 직권 신청에 의한 청구) 지원대상자의 관할 읍·면·동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없음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단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증명수수료 금액 확인(또는 출력) 등으로 영수증에 같음하여 신청

#### 【진단서 신청 시 서류 증빙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기관별현황정보>'장애 진단서'로 항목검색(지역으로 조회 가능)

- (기타사항)
  - 통장사본의 경우 행복e음으로 계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징구 가능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 3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나. 지원기준

- 지원액: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 】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li>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li> </ul> </li> </ul>
2.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li>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li> </ul> </li> </ul>
3.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li>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li> </ul> </li> </ul>
4.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li> <li>-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li> </ul> </li> </ul>

## 다. 지원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 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 4 비용 지원대상자(누락자) 발굴

- 장애등록 구비서류 안내 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상담하고 영수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 시 병행 신청하도록 함.
-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대상자에게 반드시 신청 안내 및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여 누락서비스 처리
  -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되, 필요시 직권 신청 처리
- 시·군·구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신청누락자 미처리 현황을 확인하여 읍·면·동 신청 독려 및 필요시 시·군·구에서 직권 신청 처리

##### 【행복e음 신청누락자 확인 방법】

- 행복e음>변동사후>사후관리>복지서비스권리구제>누락서비스관리>장애인누락서비스>분류 : 생활안정지원관련서비스>장애진단서발급비, 장애등록검사비

# 03

## 통합상담 및 신청







##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 1 목적

- 장애정도 결정 통지 또는 서비스 신청·상담 단계에서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욕구와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상담

### 2 수행 주체

- 읍·면·동 복지행정팀 담당 공무원

### 3 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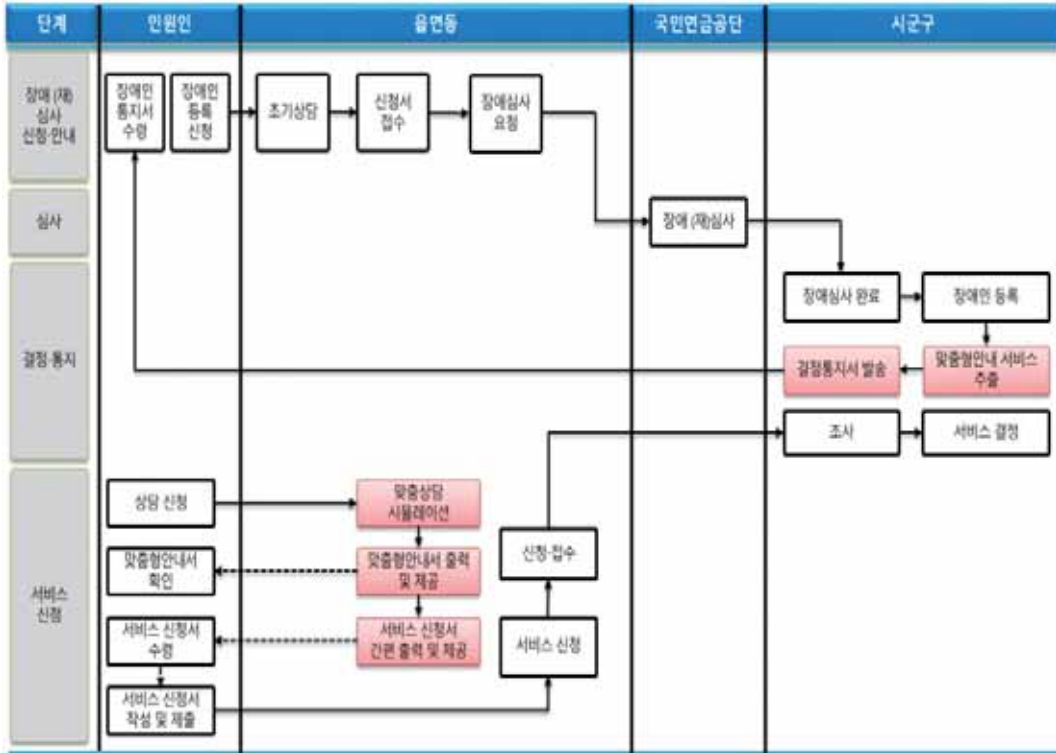
- 안내제공 시기 및 안내 방법

시기	방법
장애등록/재등록 심사결과 통지	장애정도 결정서와 함께 행복e음에서 맞춤형으로 출력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내서」(이하 '맞춤형 안내서')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부 ※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등록관리 > 장애심사관리 > 장애정도심사 대상자관리 > 장애심사결정서 및 자료보완서 출력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또는 장애정도 조정 신청 등 읍·면·동 내방 혹은 전화한 경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안내서를 제공 ※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복지 > 장애인상담 및 알림 > 맞춤형상담시물레이션

- 안내 내용

-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절차,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

#### 4 업무절차



-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조회하여 민원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대상자 정보 및 욕구 등 확인
  -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 행복e음에 등록된 대상자 인적사항\*, 장애관련 사항\*\*,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등을 확인
    - \* 가구유형, 주소, 성별, 연령, 생활환경 등
    - \*\* 장애정도, 장애유형, 주장애, 부장애, 현재 장애상태 등
  - (상담을 통한 확인)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별적 특성, 가구 특성, 주요 욕구 및 필요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 직·간접적 소득, 고용, 주거,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

○ 맞춤형 상담 시물레이션 실행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 토대로 맞춤형 상담 시물레이션 실행하여 신청 가능한 서비스 파악하고 안내
- 서비스 신청, 초기상담,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사례회의 등 다양한 통합상담 업무 과정에서 맞춤형 상담 시물레이션 실행을 통해 서비스 대상 장애인이 누락 없이 서비스 연계될 수 있도록 권장
- (행복e음 화면경로) 장애인복지(신)>장애인상담 및 알림>장애인맞춤형 상담 시물레이션

###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

1) 소득지원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시정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제 (사정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즉시지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제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발인	
전기요금할인	심한 장애	여름철(6~8월) 월 20만원 가타계할 월 10만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지리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통상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불경로 길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읍·면·동 즉시지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심한 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봄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에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사·도립 장애인복지관·장애인	

○ 상담 결과 등록

- 대상자 정보 기록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축약은 삼가고 구체적으로 입력
- 상담내용은 대상자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업무 관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

○ 신청·접수·의뢰 및 안내

- 민원인이 신청을 희망하는 서비스는 행복e음 간편 서식 출력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추가 작성이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서비스 처리유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가 안내하도록 함.

서비스 처리유형	추가안내 사항
즉시처리	장애정도(유형)만으로 제공될 수 있는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후 기한 내 처리·제공됨을 안내 * 예)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감면서비스, 휴대전화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조사필요 서비스	장애인의 활동능력이나 소득수준 등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 탈락에 따른 민원을 예방 * 예) 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타기관 의뢰서비스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상담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있을 것임을 안내 * 예) 실업급여, 직업상담, 취업지도,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등



##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1 목적

- 상담단계에서 파악한 문제 상황, 복지욕구, 장애정도, 장애상태, 건강상태 등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신청
  -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의 통합 신청 처리
  -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 안내 및 지원

단계	내용
신청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내서를 통해 파악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 절차를 안내</li> </ul>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작성, 서비스별 구비서류 등 제출</li> <li>*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별도 작성</li> </ul>
서류 보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를 보완요청</li> </ul>
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li> </ul>

##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 개별 서비스 별로 대리인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 사업별 지침 참고
- 신청 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 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반드시 읍·면·동 제출사실을 확인해야 함
  - 온라인([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연금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능

##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 신청서 별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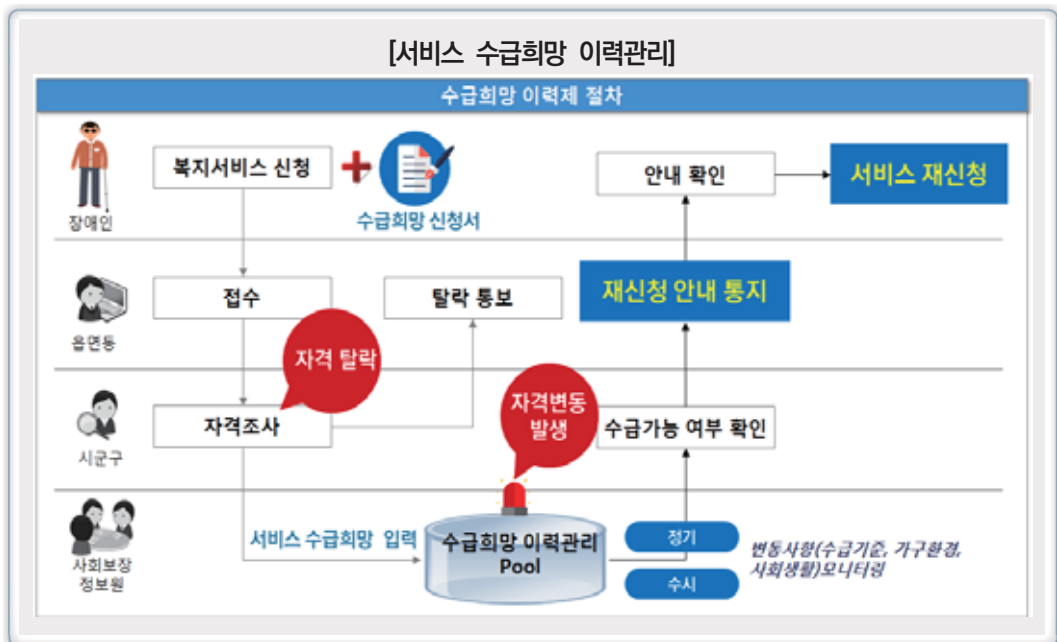
서식명	서비스	구비서류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른 서류</li> <li>- 사진1장(3.5cm×4.5cm)</li> <li>*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li> </ul>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li> </ul>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된 정보관련 증빙서류(예, 자동차 변경시 차량등록증)</li> <li>* 2014.12.24.부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등록증 등 개시(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li> </ul>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1장(3.5cm×4.5cm)</li> <li>* 본인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기존 장애인등록증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 제출 필요</li> </ul>
	도시가스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금 고지서 등)</li> </ul>
	지역 난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금 고지서 등)</li> </ul>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료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요금고지서 등)</li> </ul>
	TV수신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요금 고지서 1부</li> <li>*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li> </ul>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li> <li>- (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li> </ul>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li> <li>*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계좌</li> <li>- (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li> <li>-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등</li> </ul>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li> <li>-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li> <li>- 기타 소득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li> </ul>

서식명	서비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 용권) 신청서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li>-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li> <li>-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li> </ul>
	언어발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li>-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li> </ul>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li>- 발달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li> <li>-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li> <li>- 의뢰서(단,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li> </ul>
	장애인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li> <li>- 의료자료 제출대상의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등</li> <li>- 사회활동 및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재학증명서 등) 특별지원급여에 따른 제출서류(임신확인서 등)</li> </ul>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li>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li> <li>-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li> </ul>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li>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li> <li>-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li> <li>-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li> <li>-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li> </ul>



#### 4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신청

- (목적) 소득, 독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탈락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주기적인 공적자료 변동을 확인, 수급신청을 안내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신청대상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그 외 서비스(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를 신청하는 경우는 붙임 서식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제도 안내 및 신청접수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취지와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포함)를 징구하도록 함
  - ※ 제도의 운영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참조



## 5 자료 보완요구

-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신청 반려 처리할 수 있음.

## 6 신청서의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접수 처리
  - 제출된 구비서류 등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서비스	구비서류	행복e음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신청정보 등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장애수당		차세대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활동지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서비스의 '수급탈락자 이력관리 서비스' 신청을 함께 진행) ① 주민등록번호 옆 돋보기 버튼 클릭하여 대상자 선택하면 신청인 인적정보 조회, ② 신청구분을 신규 또는 변경신청으로 선택하고 전체 서비스 보기 버튼클릭하여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수당' 서비스선택, ③ '가족정보'에서 가구원등록 버튼 사용하여 가구원을 등록, ④ 조회된 가구원 중 가구주에 '기초의료' 대상여부를 체크, ⑤ '수급희망장애수당', '수급희망장애아동' 중 이력관리를 희망하는 서비스를 체크(둘다 체크 가능), ⑥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서비스의 '수급탈락자 이력관리 서비스' 신청을 함께 진행) ① 주민등록번호 옆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선택하면 신청인의 인적 정보가 조회, ② 대상자 정보를 입력, ③ 서비스 정보를 입력하고 '수급희망이력관리' 항목을 체크, ④ 그 외 활동지원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은 서비스 신청일과 동일하게 접수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
- 타 기관으로 서비스 의뢰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접수된 건에 대해 방문조사, 자산조사 등이 필요한 건은 즉시 의뢰 처리



### 3-3 타기관 의뢰

#### 1 목적

- 복지대상자에게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자체와 타 사회보장기관 간 복지서비스 의뢰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관련 기관에 연계함.

#### 2 법적근거

- 사회복지급여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사회복지급여 또는 복지혜택·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안내·의뢰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운영체계

- 의뢰 대상자의 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양방향 처리상태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의뢰구분	내용
① 지자체 → 기관	지자체에서 타 보장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의뢰
② 기관 → 지자체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접수 및 복지서비스 제공 보장기관의 처리상태를 지자체(행복e음)로 제공

## 4 의뢰대상 및 절차

### 가. 고용

○ (대상 기관 및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대상기관	의뢰대상 서비스	비고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업진로상담지도, 취업지원/상담 등	취업지원 및 실업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평가,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취업지원

○ (의뢰대상)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

○ (의뢰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후 각 기관으로 의뢰 및 처리결과 확인

- 맞춤형 서비스 안내과정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확인하여 의뢰가능한 고용 관련 서비스에 대해 상세 안내
-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식에서 의뢰대상 서비스를 체크하도록 하여 신청서 접수 및 의뢰 처리하고, 해당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였음을 안내
- 의뢰신청자에 대한 타기관의 처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행복e음 화면경로) 상담·신청>안내상담>서비스의뢰관리>서비스의뢰신청



## 나.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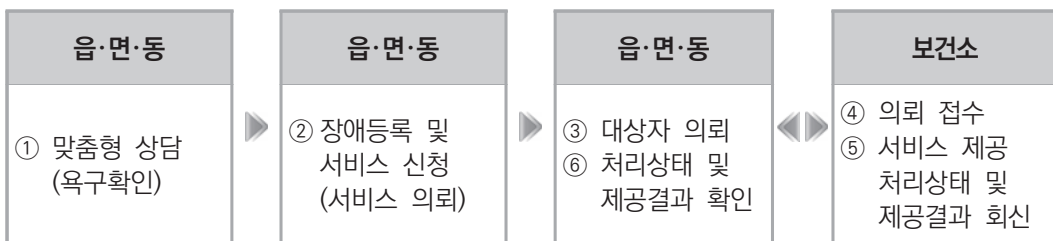
- (대상 기관 및 서비스)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CBR)
- (의뢰대상)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제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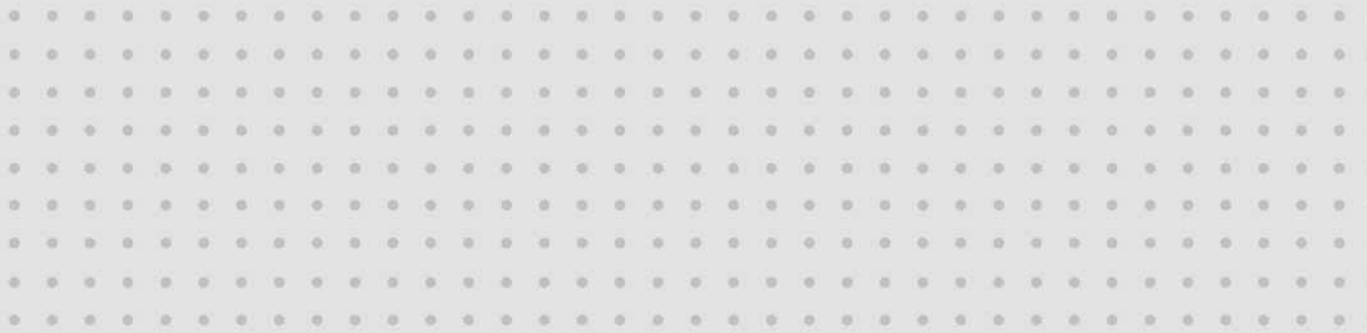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장애인</li> <li>-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의료기관 퇴원환자)</li> </ul>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 필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재활운동,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 관리 프로그램 등

- (의뢰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후 보건소로 의뢰 및 처리결과 확인
  - 맞춤형 상담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확인하여 보건소가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
  -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식에서 의뢰대상 서비스를 체크하도록 하고, 장애정도 등 민원인의 정보 및 상담욕구 등이 보건소로 전달되어 처리됨을 설명한 후 신청서 접수 및 의뢰 처리
  - 의뢰신청자에 대한 타기관의 처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의뢰가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지침 준용



○ (행복e음 화면경로) 상담·신청>안내상담>서비스의뢰관리>서비스의뢰신청



2023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 04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 1 목적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
  - 의학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2 조사의 구성

- 넓게는 ① 일반사항, ② 서비스필요도 평가, ③ 욕구조사의 3개 영역을 포괄하며, 좁게는 서비스필요도 평가를 주로 의미
  - (일반사항) 신청인의 기본 인적사항, 신청 서비스 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족상황, 주요문제 등을 조사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환경 파악
  - (서비스필요도 평가)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 등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를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계량적으로 평가
  - (욕구조사) 서비스 이용현황,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 공공·민간서비스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시 활용

### 3 조사의 내용

○ 조사유형별 평가 항목

조사유형	평가항목	비고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① 기능제한, ② 사회활동, ③ 가구환경 영역에 거쳐 총 36개 평가지표</li> <li>• (기능제한) 일상생활 동작(ADL) 관련 13개 지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관련 8개 지표 및 인지행동특성 8개 지표로 구성(성인기준)</li> <li>* ADL(일상생활 동작) : Activities of Daily Living(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li> <li>* IADL(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전화사용, 물건사기, 청소 등)</li> <li>* 인지·행동특성: 주의력, 위험인식 등</li> <li>•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의 2개 지표로 구성</li> <li>• (가구환경) 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지하층 거주 등 5개 지표로 구성</li> </ul>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일상생활 동작,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인지 행동 특성에 거쳐 성인 7개, 아동 4개 지표로 구성</li> </ul>	

- (평가방식)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
  - 가정방문시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2인 1조를 구성해 방문함이 원칙
- (평가점수) 평가지표별·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출
- (결과활용) 개별서비스 목적·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기준 설정
  - 종합점수를 활용(활동지원, 응급안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하거나, 개별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특정 항목 평가점수를 활용(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 절차

### 1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 ○ 적용서비스

- (일상생활)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 대상 정의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차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개정(2020. 10. 30.)에 따라 이용 대상 확대됨.
  - (주요내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보행상장애인+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을 최소기준으로 각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외 추가적인 기준은 각 시·군·구별 조례 등 확인 필요

### 2 업무처리절차

\* 세부내용은 종합조사 적용서비스별 사업안내 참조

#### 가. 서비스 신청접수 및 종합조사 의뢰

-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별로 세부요건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등록하고,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 의뢰

- (활동지원)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등록 및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를 의뢰
  - 신청인이 신청서의 '특별지원급여',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란의 세부사항을 체크하는 경우 이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증빙 제출 서류를 받은 후 접수 등록
  - 신청인이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인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이를 제출받은 후 제출된 서류(사회활동, 가구환경, 의료자료 등)는 별도 스캔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 의뢰 시 전송
-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유효한 종합조사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조사 필요한 경우에만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 기존의 유효한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고 해당서비스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 가능
- (응급안전) 활동지원수급자에 한하여 신청 접수(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불필요)
  - ※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기 실시된 종합조사 결과 일부를 활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경우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 장애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이를 제출 받은 후 제출된 서류는 별도 스캔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 의뢰 시 전송
  - 기존의 유효한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 가능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 서식 및 방법】**

- (2019. 7월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재판정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내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해당여부 확인
- (2019. 7월 이전 등록 장애인)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발급 후,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구)> 참고하여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 나. 종합조사 실시

- 시·군·구를 통해 종합조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실시
    - 활동지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격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팀)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 방문조사 담당 직원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직원으로 2인 1조 구성이 원칙이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국민연금공단을 필요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활동지원기관에 방문동행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방문조사 시 활동지원인력 파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이의신청(조사 및 심의)의 경우도 상기 절차를 준용

## 다. 조사결과 제출 및 보장결정

- (결과제출)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제출
- (보장결정)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별 적격 기준에 따라 보장 결정 처리

**참고 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9.>]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7. 12. 1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1. 12. 21.>

③ 삭제 <2011. 1. 4.>

[제목개정 2011. 1. 4.]

**제60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본조신설 2011. 3. 30.]

**제84조(이의신청)** ①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제85조의2(비밀누설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 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7., 2022. 9. 6.>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장소·목적·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4. 11. 4., 2016. 12. 30., 2017. 3. 27., 2018. 6. 19., 2018. 12. 31., 2021. 6. 29.>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8. 6. 19.>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7. 10. 31.>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 1. 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의4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4.]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6. 4.>]

**제27조(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9. 1., 2012. 7. 27., 2016. 6. 30., 2021. 6. 4.>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③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7. 27., 2016. 6. 30., 2021. 6. 4.>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제목개정 2012. 7. 27.]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2020. 10. 30.>

1. 삭제 <2019. 6. 4.>

2. 삭제 <2019. 6. 4.>

3. 삭제 <2019. 6. 4.>

4. 삭제 <2019. 6. 4.>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9. 6. 4.>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③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9.>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4. 10.]

## 참고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b>일상생활동작(ADL)</b>	①	②	③	④	13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6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3점	6점	18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음식물먹이기	0점	2점	4점	12점	
	5. 식사하기	0점	4점	6점	24점	
	6.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7. 옮겨맞기	0점	5점	10점	30점	
	8. 시침착복합평가	0점	6점	12점	36점	
	9. 앉은자세유지	0점	3점	6점	18점	
	10. 실내이동	0점	4점	8점	24점	
	11. 실외이동	0점	8점	16점	48점	
	12. 배뇨	0점	6점	12점	36점	
13. 배뇨	0점	4점	8점	24점		
계		318점				
기능제한 (X1)	<b>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b>	①	②	③	④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식사준비	0점	4점	6점	24점	
	4. 청소	0점	2점	4점	12점	
	5. 빨래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약 챙겨먹기	0점	2점	4점	12점	
	7.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8.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계		120점				
기능제한 (X1)	<b>인지행동특성</b>	①	②	③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주의력	0점	10점	20점		
	2. 위험인식 및 대처	0점	9점	18점		
	3. 환각·망상	0점	2점	4점		
	4. 조울상태	0점	2점	4점		
	5. 문제행동	0점	4점	8점		
	6. 공격행동	0점	4점	8점		
	7. 자해행동	0점	4점	8점		
8. 집단생활부적응	0점	12점	24점			
계		94점				
사회활동 (X2)	<b>사회활동</b>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12점				
가구환경 (X3)	<b>가구특성</b>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독거가구	0점	36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b>주거특성</b>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미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미동에 제한이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4점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b>일상생활활동작(ADL)</b>		①	②	③	④	9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2점	4점	12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식사하기	0점	5점	10점	30점		
	5.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6. 옮겨앉기	0점	3점	6점	18점		
	7. 걷기	0점	9점	18점	54점		
	8. 화장실사용하기	0점	7점	14점	42점		
	9. 시청각복합평가	0점	5점	10점	30점		
	계	234점					
	<b>수단적 일상생활활동작(IADL)</b>		①	②	③	④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4.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5. 본인물건관리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학습하기	0점	4점	8점	24점			
계	96점						
<b>인지행동특성</b>		①	②	③	④	5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문제 행동	0점	3점	6점	18점			
2. 공격 행동	0점	2점	4점	12점			
3. 자해 행동	0점	2점	4점	12점			
4. 위험인지하기	0점	3점	6점	18점			
5. 의사소통하기	0점	4점	8점	24점			
계	84점						
사회활동 (X2)	<b>사회활동</b>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12점					
가구환경 (X3)	<b>가구특성</b>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0점	18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b>주거특성</b>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미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미동에 제한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4점					



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①	②	③	④	
일상생활활동	1. 옮겨 앉기	0	3	6	18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앉은 자세 유지	0	4	8	24	
	3. 실내 이동	0	5	10	30	
	4. 실외 이동	0	7	14	42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5. 대중교통 이용	0	8	16	48	
인지행동특성	6. 주의력	0	12	24	-	
	7. 위험인식 및 대처	0	21	42	-	
계		228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①	②	③	④	
일상생활활동	1. 옮겨 앉기	0	3	6	18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걸기	0	8	16	48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3. 대중교통 이용	0	9	18	54	
인지행동특성	4. 위험 인지하기	0	7	14	42	
계		162				

부 칙 <제2020-237호, 2020. 10.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I. 일반사항

신청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보조기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갱신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이의					
	(변경) 장애 상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신체·정신기능 상태 변화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독거가구 <input type="checkbox"/> 취약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족 <input type="checkbox"/> 거주지위치 <input type="checkbox"/> 학교생활 <input type="checkbox"/> 직장생활 <input type="checkbox"/>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특별지원급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일시부재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또는 주수발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input type="checkbox"/> 신장장애 <input type="checkbox"/> 심장장애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장애 <input type="checkbox"/> 간장애 <input type="checkbox"/> 안면장애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장애 <input type="checkbox"/> 뇌전증장애 * 중복시 모두 체크						
	주된 장애유형				중복 장애유형		
방문 조사원	성명1				일시 (소요시간)	. . . ( 분)	
	성명2						
(참고사항)							

국민연금공단 ○○○○지사





## II.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

### 가. 일상생활분야

#### 1. 성인용(만 19세 이상)

##### 1) 가구환경

동거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가구원 수 :            명)	
가구원 상세 현황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조부 <input type="checkbox"/> 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중복 시 모두 체크	
독거가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취약가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엘리베이터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거주지위치	<input type="checkbox"/> 1층	<input type="checkbox"/> 지하 1층 이하 <input type="checkbox"/> 지상 2층 이상
특이사항		

##### 2) 사회활동

학교생활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학교명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장생활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직장명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특이사항		

3) 일상생활동작(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옷 갈아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욕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구강청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음식물넘기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식사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옮겨얹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시청각복합평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앉은자세유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실내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실외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배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배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전화사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물건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청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빨래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약챙겨먹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금전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대중교통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5) 인지행동특성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부분적 지원필요	③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주의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인식 및 대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환각·망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조울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문제행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공격행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자해행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집단생활부적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아동용(만 19세 미만)

## 1) 가구환경

동거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가구원 수 :            명)		
가구원 상세 현황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조부 <input type="checkbox"/> 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중복 시 모두 체크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조손가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취약가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엘리베이터 설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거주지위치	<input type="checkbox"/> 1층 <input type="checkbox"/> 지하 1층 이하 <input type="checkbox"/> 지상 2층 이상		
특이사항			

2) 사회활동

학교생활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학교명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장생활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직장명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특이사항		

3) 일상생활동작(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옷갈아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욕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구강청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식사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옮겨얹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걷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화장실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시청각복합평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전화사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물건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금전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대중교통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본인물건관리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학습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5) 인지행동특성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문제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공격행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해행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위험인지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의사소통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이동지원분야

## 1. 성인용(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일상생활동작	1. 옮겨 앉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앉은 자세 유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실내 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실외 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5. 대중교통 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지행동특성	6. 주의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위험인식 및 대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아동용(만 19세 미만)

조사영역	조사항목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일상생활동작	1. 옮겨 앉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걷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5. 대중교통 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지행동특성	7. 위험 인지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Ⅲ.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 계획

※ 현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지 확인하고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주는 사람*	1-4. 이용희망 횟수	1-5. 이용희망 시간
<input type="checkbox"/> 신체수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목욕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병원·약국·이동, 쇼핑, 산책, 친구·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 이용, 종교활동, 문화·여가활동, 여행하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통학지원(등하교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학습보조(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통근지원(출퇴근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업무보조(직장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지원 (듣기, 쓰기, 전화사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간호서비스지원(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도뇨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_____	( )회/월	( )시간/회



## 〈보기〉

주로 도와주는 사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인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활동지원사·유료 가정봉사원(간병인)	⑪ 무료 가정봉사원(간병인)	⑫ 자원봉사자
⑬ 기타			

※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참고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 ◆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시행규칙 제13조(공통서식)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등),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부칙[2017.12.19. 제15273호]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 ◆ 시행령 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